

# 정 관 (제정 1980. 12. 1.)

개정 1983. 1. 24.  
 1984. 3. 6.  
 1985. 3. 18.  
 1987. 4. 2.  
 1988. 4. 7.  
 1989. 4. 24.  
 1990. 4. 5.  
 1994. 5. 9.  
 1995. 12. 1.  
 1996. 4. 8.  
 1997. 4. 1.  
 2000. 4. 21.  
 2001. 7. 1.  
 2004. 3. 20.  
 2012. 4. 1.  
 2015. 4. 1.  
 2017. 6. 5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이 법인은 새마을운동중앙회(이하 '중앙회'라 한다)라 칭한다. 영문 표기는 'Korea Saemaul Undong Center' 로 하고 약칭은 'KSC' 로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중앙회는 새마을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정신을 함양하여, 지역사회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발전, 나아가 지구촌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무소)** 중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①중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
2. 회원 및 회원단체에 대한 업무협조 및 조정
3. 국내·외 새마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

4.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내·외 홍보와 국제협력
5. 국내·외 새마을분야 전문가 양성
6. 새마을지도자 후생복지 사업 및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포상
7. 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·연구와 이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비 등 지급  
· 지원
8.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

②중앙회(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에서는 전항의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5조(정치관여 금지)**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## 제2장 하부조직 및 부설기관

**제6조(하부조직)** ①중앙회는 서울특별시, 광역시, 도 및 특별자치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지부를, 시·군·구(비자치구를 제외하고 시·도 출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
②지회는 필요할 때에는 지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읍·면·동에 분회를 둘 수 있다.

③이북5도민의 새마을운동 참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이북5도지부를 둘 수 있다.

④중앙회는 필요한 경우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⑤지부·지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중앙회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회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부설기관)** ①중앙회는 새마을교육과 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연수원 및 대학원과 연구소를 둘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과 연구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제3장 회원 및 회원단체

**제8조(조직)** ①중앙회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설립된 법인인 새마을회를 회원으로 한다.

②중앙회는 제1항의 회원 외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단체를 회원단체로 한다.

1.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
2.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

3.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
4. 새마을문고중앙회
5. 새마을금고중앙회

③전항 제1호 내지 제4호 회원단체의 회칙·정관 제·개정 시에는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전항 제1호 내지 제4호 회원단체장의 취임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⑤중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단체 외에 새마을운동에 관련 있는 사회·문화·종교 등 직능단체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단체로 가입시킬 수 있다.

⑥회원 및 회원단체(이하 “회원단체 등”이라 한다)와의 관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**제9조(회원단체 등의 권리·의무)** ①회원단체 등은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.

1.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, 발언권·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
2. 중앙회 정관이 정하는 사항 및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의결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중앙회의 운영 또는 사업 등에의 참여
3. 회원단체 등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회의 협조 및 지원 요청

②회원단체 등은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.

1. 정관 및 규정의 준수
2.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회의 의결사항의 이행
3.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

**제10조(회원단체 등의 제명)** 회원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을 발의하고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.

1. 제9조제2항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
2. 중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
3. 중앙회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

**제11조(준회원단체의 운영)** ①중앙회는 제8조제5항의 직능단체를 정식 회원단체로 가입시키기 위한 전단계로서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어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수 있다.

②중앙회는 준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,

새마을명칭·표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③준회원단체의 운영, 업무지원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제4장 대의원총회

**제12조(총회)** ①중앙회에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총회 (이하 “총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총회의 대의원의 정수는 400인 이내로 한다.

③대의원의 자격,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**제13조(총회의 기능)**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연도별 본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연도별 기본사업계획의 승인
4. 임원의 선임 및 해임
5. 회원단체의 가입과 회원 및 회원단체 제명과 재가입의 승인
6. 기타 중요한 사항

**제14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**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이사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**제15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)** ①총회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③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**제16조(의장)** ①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
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당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5장 이 사 회

**제17조(이사회의 구성)**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 및 이사(이하 이 장에서 “이사” 라 한다)로 구성한다.

**제18조(이사회의 기능)**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기본사업계획 중 일부 사업의 변경, 폐지 및 신규사업의 의결
2. 예산·결산 및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
3. 추가경정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4. 하부조직의 설치·폐지·합병·분할·변경의 결정에 관한 사항
5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
6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7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8. 지부·지회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
9.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19조(이사회 의 소집)**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**제2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** 이사회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6장 임 원 등

**제21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 등)** ①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5인
3. 사무총장 1인
4. 이사 15인 이내
5. 감사 2인

②제1항 각 호 규정의 임원 외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회장과 사무총장은 상근으로 하며 이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④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
**제22조(임원의 선임)** ①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②부회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단체의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
④이사는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원단체 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, 제8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회원단체 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과 시·도새마을회 회장 및 사계전문인사 중 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총회가 선임한다.

⑤임원의 자격,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**제23조(임원의 임기)** ① 회장, 사무총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선된 임기는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4.3.20>

② 회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일에 종료된다.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된다.

③ 부회장의 임기는 그 본직의 임기에 의한다.

④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사무총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삭제

**제24조(임원의 직무)** ① 회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 정관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감사는 중앙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25조(임원의 해임)**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발의하고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 다만,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.

1. 법령,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앙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
3. 선거관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
4. 새마을사업을 병자하거나 새마을조직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였을 때
5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

②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회원단체 등과 하부조직의 임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 또는 조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.

**제26조(임원의 퇴임 및 사임)** ①선임된 임원이 임기 중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 규정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.

**제27조(명예회장 및 고문)** ①회장은 총회에서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.

②회장은 새마을운동의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둘 수 있다.

## 제7장 재산 및 회계

**제28조(재산의 종류)** 중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중앙회 소유 동산 및 부동산
2. 새마을기금 <개정 2004.3.20>
3.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
4. 보조금, 출연금 및 기부금
5. 기타 수입금

**제29조(재산의 구분)** ①중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부동산
2. 새마을기금 <개정 2004.3.20>
3.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

③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**제30조(기금)** 새마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 <개정 2004.3.20>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재산 및 출연금
2. 국내·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
3. 기타 수입금

**제31조(운영재원)** 중앙회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
2. 보조금, 출연금 및 기부금
3. 기타 수입금

**제32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)**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(이하 “주무부장관” 이라 한다)에게 제출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예산서 1부
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결산서 1부
3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
**제33조(회계연도)**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제8장 사무국

**제34조(사무국의 설치)** ①중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, 지부 및 지회에 사무국을 둔다.

②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**제35조(사무총장 및 직원)** ①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②지부 사무처장은 지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지부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지부사무국 직원과 관할 지회사무국장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지회 사무국장은 지회장 및 지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지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## 제9장 지부·지회 임원과 이사회

**제36조(지부·지회의 임원)** ①지부 및 지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각각 두며 비상근으로 한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5인 이내
3. 이사 15인 이내
4. 감사 2인

②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
③제1항 각호 규정의 임원 외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**제37조(임원의 선임)** ①지부회장은 지부임원과 관할 지회·새마을회 회장의 연석 회의에서 선출한 자를 회장이 승인하며, 지회회장은 지회임원과 관할 회원단체 동회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한 자를 지부회장 또는 시·도새마을회회장이 승인한다.

②부회장은 당해 회원단체의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③지부이사는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원단체 시·도회장이 추천하는 각



2인, 제8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회원단체 시·도회장이 추천하는 각1인과 시·군·구지회·새마을회 회장 및 지역인사 중에서 지부회장이 임명하며, 지회이사는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원단체 시·군·구회장이 추천하는 각2인, 제8조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회원단체 시·군·구회장이 추천하는 각1인과 지역인사 중에서 지회회장이 임명한다.

④감사는 당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**제38조(임원의 임기)** ①지부·지회 회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지부·지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선된 임기는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 
<개정 2004.3.20>

②부회장의 임기는 그 본직의 임기에 의한다.

③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일에 종료된다.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된다.

④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⑤ 삭 제

**제39조(임원의 직무)** ①지부·지회 회장은 당해 지부 또는 지회를 대표하며 당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부회장은 지부·지회 회장을 보좌하며 지부·지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당해 지부·지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지부·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 중앙회 또는 지부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
④감사는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당해 이사회에 보고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40조(지부·지회 이사회)** ①지부·지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부·지회 이사회를 둔다.

②지부·지회 이사회는 지부·지회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각각 구성한다.

③지부·지회 이사회의 기능,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제 10장 시도, 시군구새마을회

**제41조(법인의 설립과 명칭)** ①지부 및 지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고 그 명칭은 ‘(시도, 시군구)새마을회’ (이하 ‘새마을회’ 라 한다)로 한다.

②지부·지회가 법인으로 설립코자할 때에는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지부·지회가 법인으로 설립됨과 동시에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 설치된 해당 분사무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.

**제42조(중앙회와 새마을회와의 관계)** ①중앙회와 새마을회는 동일한 이념, 정신, 목표, 상징물을 가지고, 공통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조직이다.

②새마을회는 설립과 동시에 중앙회의 회원이 되고 그 대표자는 중앙회 총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.

③회장은 새마을운동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마을회의 정관예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④새마을회는 정관예 중 명칭, 목적, 사업 중 새마을운동 추진과 새마을교육, 운영원칙, 중앙회와의 관계,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, 재산의 관리 및 잔여재산의 처리는 변경하지 못한다. 다만, 임원의 임기는 중앙회 또는 중앙회 회원단체 정관 및 회칙의 개정으로 임기가 변경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새마을회가 정관을 변경할 시에는 회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⑥새마을회는 중앙회가 시행하는 전국적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⑦중앙회 총회에서 제명된 새마을회는 임원 전원을 교체한 후 회원으로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.

**제43조(중앙회의 업무 등의 지원)** ①중앙회는 새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회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경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③중앙회의 각종 규정은 새마을회가 자체 규정을 제정할 때 까지 준용할 수 있고 회장은 새마을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새마을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**제44조(회원단체)** 새마을회는 중앙회에 준하는 회원단체를 둘 수 있고 회원단체는 새마을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회원단체의 자율적 활동은 보장된다.

## 제 11 장 보 칙

**제45조(정관개정)** 중앙회의 정관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46조(새마을명칭·표장 등의 사용금지)** 이 정관에 의한 새마을조직이 아니면 새

마을명칭·표장을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관계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중앙회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새마을명칭·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.

**제47조(해산)** 중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48조(법령준용 및 규정의 제정 등)** ①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정관은 198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및 소속기관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각각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198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198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정관은 198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의 사무총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새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198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정관은 198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및 소속기관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각각 선임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③(명칭변경)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정과 규칙의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및 산하조직에 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정관은 199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정관에 의해서 제정된 제규정과 규칙의 지회사무소와 사무장에 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보며, 이 정관 시행당시 시·군·구지회에 재직 중인 사무장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정관은 199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1995년 2월 28일 이전에 선임된 지부회장의 임기는 1995년 3월 31일까지로, 1995년 1월 31일 이전에 선임된 지회회장의 임기는 1995년 2월 28일까지로 본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정관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비자치구 지회의 폐지) 일반시의 구(비자치구)에 설치된 지회는 1995년 12월 3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정관은 199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회장이 임용하여 지부 및 지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지부 및 지회가 법인으로 설립되더라도 임용권은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정관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임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무총장과 1997년 2월말 또는 3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지부 및 지회임원의 임기는 구정관에 따른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규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) 구정관에 의해 제정된 규정·규칙은 이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정관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하부조직 등에 대한 경과조치) 구 정관에 의해 설치된 하부조직 및 부설기관은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- 제4조(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,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와 이들 하급조직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각각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.
- 제5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관련규정 및 규칙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및 산하조직의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보며, 지부·지회 운영위원회는 지부·지회 이사회로 운영위원은 이사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정관은 200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관련규정 및 규칙 중 “새마을국민기금“은 “새마을기금“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, 시·도, 시·군·구새마을회정관에 제2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다만, 보선된 임기는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규정의 개정)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- 「시·도, 시·군·구새마을회정관에 제7조 <시·군·구새마을회 경우> 제1항 제5호 “새마을금고연합회○○시(군·구)협의회 회원” 을 “새마을금고중앙회○○시(군

·구)협의회 회원” 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 제5호 “새마을금고연합회○○도(특별, 광역시)〈○○시(군·구)〉(지부)협의회” 를 “새마을금고중앙회○○지역본부〈○○시(군·구)협의회〉” 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7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번에 개정된 정관의 제7조제1항의 대학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